

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경관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경관 조례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중소기업 ombudsman의 「도시미관 지방규제 합리화」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5조의 기준에 맞춰 경관계획의 수립·변경 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(안 제7조)
- 나. 중소기업 ombudsman 권고안 및 道내 시·군 기준을 참고하여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함(안 제22조)
 - 도로·철도·도시철도·하천 : 30억원→100억원 / 공원 : 5억원→10억원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1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시계획과(우 10932)
 - 전화 : 031)940-5371 / Fax 031)940-4709 / 이메일 bogi2001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경관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